#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034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윤후덕·김정호·한정애

홍기원 · 정준호 · 박민규

김성회 • 전진숙 • 정성호

맹성규 • 이병진 • 부승찬

박수현 · 임미애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·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,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 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 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함(안 제19조의2 신설).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3항).
- 다.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,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 도록 함(안 제23조).
- 라.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 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24조).
- 마.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·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5 조제2항).

##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2(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 및 관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제공의 효과성·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점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·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중점데이터를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제공 형태를 정비하여야 한다.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는 공 공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④ 그 밖에 국가중점데이터의 지정·관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국가중점데이터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"사회적"을 "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"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전단 중 "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"를 "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(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의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경우이용자가 이를 이용·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의 기준과 구체적인 제공 형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5조제2항 중 "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

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·남용을 방지하기"를 "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"로, "이용자"를 "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
- 2.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·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9조의2(국가중점데이터의 지
	정 및 관리) ① 행정안전부장
	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공
	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제
	공의 효과성・시급성이 높은
	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
	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
	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
	<u>터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</u>
	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	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
	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점
	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・활용
	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
	요한 경우 국가중점데이터를
	적절한 방식으로 가공하거나
	제공 형태를 정비하여야 한다.
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
	따라 국가중점데이터를 관리하
	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④ 그 밖에 국가중점데이터의
	지정・관리 및 행정안전부장관

제22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 •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·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④ (생략)

<신 설>

- (생 략)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② -----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.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 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의 국가중점데이터 관리 지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제22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-----제19조 의2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 ④ (현행과 같음) 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 ① 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 ① (현행과 같음) -----한다. <후단 삭제>

>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(국회・법원・헌

<신 설>

제24조(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제24조(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) ① · ② (생 략) 구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<u>신 설></u>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의2

③ (생 략)

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제외한다)의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필 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조치 결과를 해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9조의2 에 따른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 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 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이용・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 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신 설>

제25조(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· 제25조(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· 훈련) ① (생 략)

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 이터의 오용・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- ⑤ 제3항에 해당하는 공공데이 터의 기준과 구체적인 제공 형 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훈련) ① (현행과 같음)
-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 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--------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-----
  - 1.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
  - 2.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 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・남 용 방지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공공데 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(현행과 같음)